

더 많은
혜택주는

2019 두루누리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NPS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Contents

Chapter I	한 눈에 보는 두루누리 가이드북	05
	1. 사회보험이란?	06
	2.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4대 사회보험공단)	10
	3.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지방자치단체 등)	12
	4. 사회보험 미가입신고센터	14
Chapter II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7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18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19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20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22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24
Chapter II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29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30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1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32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33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서식	35
	★ 사업주 지원혜택 산정표	39
Chapter IV	사회보험의 혜택은?	43
	1. 고용보험 혜택	44
	2. 산재보험 혜택	48
	3. 국민연금 혜택	52
	4. 건강보험 혜택	56
Chapter V	알면 도움 되는 TIP!	59
	1.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60
	2. 퇴직연금제도	67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019 두루누리 가이드북

한 눈에 보는 두루누리 가이드북

1. 사회보험이란?
2.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4대 사회보험공단)
3.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
(지방자체단체 등)
4. 사회보험 미가입신고센터

Chapter

I

1.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실업·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 의무가입 이유

민간에서 사회보험을 맡는다면 보험사는 유리한 사람만 가입시키려고 할 수 있고, 사업주도 필요한 사람만 가입시키려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여 의무가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고용 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1995년 시행>
산재 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국민 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써 소득이 있을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건강 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국민 (18세~60세 미만)	국민 (나이제한 없음)
적용제외	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현장 근로자 ③ 연면적 100㎡ (200㎡)이하 건축(대수선)공사	①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자	① 상시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②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③ 3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③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④ 1개월 미만 또는 1개월간 8일미만 일용근로자
보험료율	1.55%	매년 업종별 고시	9%	7%(직장)

※ 산재보험의 경우 18. 7. 1.부터 ①을 제외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 4대 사회보험 가입절차

고용보험

- **신고기한** :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근로자 고용신고서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및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를 통해 신고
- **문의전화**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산재보험

국민연금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서류**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 **문의전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 **신고기한** : 근로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 **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전자민원 -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 보험료 산정방법

고용보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고용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X (실업급여보험료율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산재보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X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를 곱하여 산정

국민연금보험료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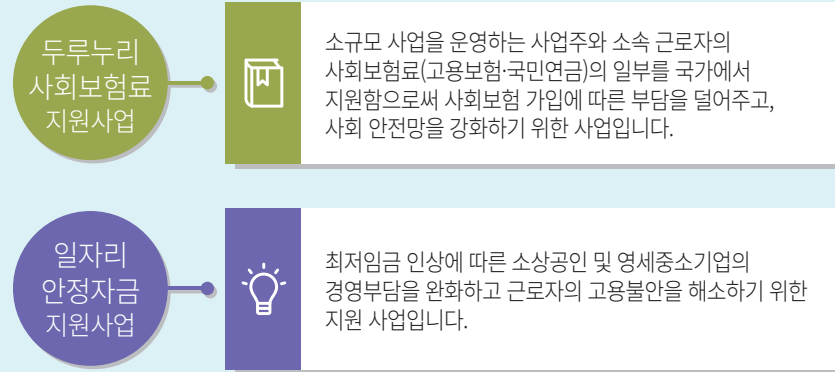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건강보험료 = 개인별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2.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4대사회보험공단)

사회보험료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 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대상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50,000원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만큼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지원방법	아래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원 1. 사업주 계좌로 수령 2. 사회보험료 대납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이하) 신청 시 참고사항

Tip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조리·음식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 한도)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예시) 5명 미만 사업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경우
(월평균보수 2,099,000원, 신규지원자 1명으로 가정)

월평균보수 2,099,000원	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계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합계	368,340원	272,720원	138,720원	134,000원	+ 월 최대 150,000원 지원
고용보험 (90%지원)*	32,520원	29,260원	16,990원	12,270원	
국민연금 (90%지원)	188,900원	170,000원	85,000원	85,000원	
건강보험 (50%경감)**	146,920원	73,460원	36,730원	36,730원	

* 고용보험료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 이후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동시 취득신고 포함)를 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50%(2019.4.1. 부터는 최대 6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지원 신청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 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total.kcomwel.or.kr)	전자신고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방문·우편 팩스신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3. 소규모 사업장 지원제도(지방자치단체 등)

▶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주에게 드리는 추가 혜택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	구 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용보증재단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30명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5명미만 사업장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명미만 사업장)
최대 7천만원 신용보증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융자
5년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0%	대출금리	2.50%(고정금리)
연 0.8%	보 증 료	연 1.0%
전국 120개 신용보증재단 지점 ☎ 1588-7365	신청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국번없이 1357

▶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지자체 혜택

해당 자치단체	지원대상 (도내 소재 사업장)	지원내용	지원신청
강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업장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지원	해당 지자체 내 시·군청 주민자치센터(읍·면·동 사무소)
충청남도	10인미만 사업장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지원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사업

- **지원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고용보험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년 이내 보증신청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 · 소상공인
(단, 개업하고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최대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대출은행금리 - 2.5%(서울시 지원)
- **보 증 료** : 연 0.5%
- **신청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50%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soaya@korea.kr)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경제정책과 소상공인담당(우 51154)
- **문의전화** : 경상남도소상공인정책과(055-211-34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4등급인 자
- **지원내용** : 2019년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3년간 기준보수액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팩스(042-367-7706),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042-363-7862, 7838),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없이 1357)

서울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기준보수액이 1~4등급인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를 지원
- **문의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4. 사회보험 미가입신고센터

생활주변에 있는 미가입사업장 발견시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사업장이란?

- 사회보험 제도 및 보험가입 대상여부를 알지 못하여 미가입한 사업장
 - 보험가입 대상임을 알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
- ※ 유의사항
- 근로자 없이 가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가입 대상이 아님
 - 금융기관처럼 동일 사업주의 지점 · 영업소 · 출장소 및 공공기관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방법



- ① 영수증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근로자 유무와 근무형태 등을 확인
- ② 미가입신고센터 접속하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가입 · 납부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국민연금가입지원 신고센터
- ③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회하여 미가입된 경우 '신고'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1. 미가입사업장 신고센터로 이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미가입 신고센터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2.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① 조회하려는 보험의 종류 선택
②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사업장명(이름)은 소재지를 선택)을 입력
③ "가입 조회하기" 클릭

3. 미가입사업장 신고
① 신고방법 선택 (익명, 실명, 가입발급단)
②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4.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개인정보 수집·동의 여부 확인
입력한 개인정보는 미가입사업장 가입 관련 업무 등 동의한 내용에 사용됩니다.

5. 신고·신청내용 입력
① (실명으로 신고를 할 경우)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입력
② 신고하려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정보 입력
③ "확인" 클릭

TIP. 신고 및 진행상태 확인
① 미가입신고 내용 입력 시 설정한 비밀번호, 연락처 입력
② "조회하기" 클릭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019 두루누리 가이드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서식

Chapter

II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 온라인 검색창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을 검색하세요.



▶ 홈페이지 메뉴 한번에 보기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 '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년(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의 경우 '20년까지 지원하고 '21년부터 지원 중단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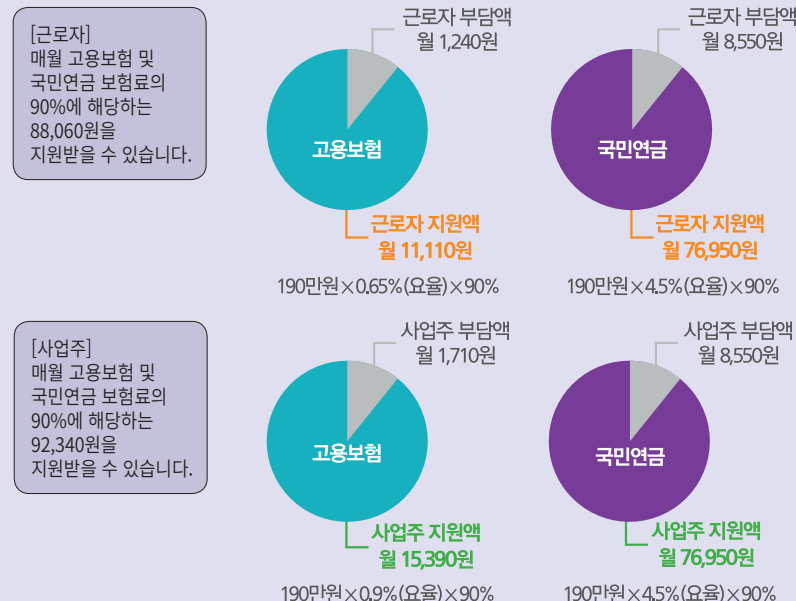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근로자수	지원내용
신규지원자	5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명 이상 10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기지원자	10명 미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40%

*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지원금 산정 사례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인 신규지원자의 경우



▶ 두루누리 계산기로 지원금 모의계산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산출내역은 입력한 내용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tep 1

나의 일터에는 __명이 일하고 있다.

1~4명 5~9명 10명 이상

Step 1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선택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tep 2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10만원 미만이다.

예 아니요

Step 2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여부를 선택합니다.

두루누리 계산기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Step 3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입력해주세요.

원

결과보기

Step 3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 결과

· 사업(장)규모 : 5~9명 · 월평균보수 : 2,000,000원
· 국민연금은 2,000,000원으로 계산

※ 아래의 산출내역은 입력한 내용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로 실제 지원받은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개월 기준)					
구분	보험료 총액 (A)	사업주 지원액 (B)	근로자 지원액 (C)	지원액합계 (D=B+C)	남부담 보험료 (A-D)
신규지원자	31,000원	14,400원	10,400원	24,800원	6,200원
기지원자		7,200원	5,200원	12,400원	18,600원

국민연금 (1개월 기준)					
구분	보험료 총액 (A)	사업주 지원액 (B)	근로자 지원액 (C)	지원액합계 (D=B+C)	남부담 보험료 (A-D)
신규지원자	180,000원	72,000원	72,000원	144,000원	36,000원
기지원자		36,000원	36,000원	72,000원	10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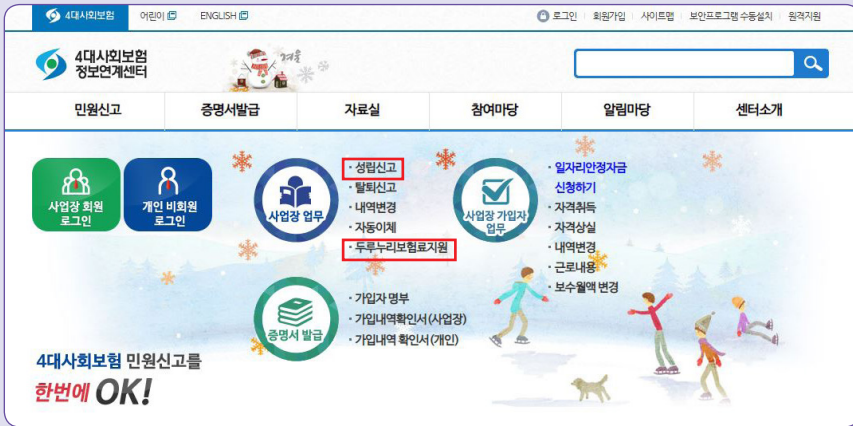
모의계산 결과

입력한 조건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 전자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기가입 사업장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미가입 사업장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부과)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서면신고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

보험가입 여부	기성립 사업장	미성립 사업장
제출할 서류	1. 보험료지원신청서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 민원신청 ▶ '신청서 찾기' 클릭

▶ 찾아가는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등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락을 주시면 직원이 방문하여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주요 업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NPS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1355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작성 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4)(4)] <개정 2017. 12. 28>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1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1)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시를 합니다.
 * 2)는 사업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일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중을 표기하여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관리번호 (23-45-67890-0)		명칭 근로복지공단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전화번호 (유선) 052-123-4567		(이동전화) 010-1234-5678 FAX번호 052-123-4568			
보험사주 대행기관		보험번호		명칭	
보험사주 대행기관		보험번호		명칭	
구분		성명		국적	
주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대표자 여부		국적	
1 김근로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2 박공단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3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4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2019년 1월 4일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작성 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개정 2017. 12. 28>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019년 1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X"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23-45-67890-0) 명칭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등록번호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제출을 감행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소재지 울산시 중구 중가로 340 보험사주대행기관 번호 보험사주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052-123-4567 (휴대전화) 010-0000-0000 FAX번호 052-123-4567
 공시명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건설업만 해당) (직무내용) (근무지) [] 본사 [] 해당 사업장 [] 다른 사업장

성명 김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국적 체류자격 한국
 전화번호(휴대전화) 010-1234-5678
 직종 부호 024

근로일수 (○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					31					31					31					31					31					31					31				

근로일수 일 (3) 시간 8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13 일 일 일 일 일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1,300,000 원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1,300,000 원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분과구분 (해당지안)
 부호 사유
 지급월 2월 월 월 월 월 월
 과세소득 (과세소득) 원 1,300,000 원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소득세 원 원 원 원 원 원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보험사주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019년 2월 15일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더 많은 혜택주는 2019 두루누리 가이드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서식
- ★ 사업주 지원혜택 산정표

Chapter

III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 온라인 검색창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을 검색해보세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주 요건

- ▶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00명 미만까지 지원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300명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지원 제외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 30명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고용조정 한 사업주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일당 97,000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 합법 외국인, 초단시간근로자, 5명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도 지원
-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특수관계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는 제외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금 산정

주 40시간 이상,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2만 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	• 22일 이상 : 13만 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2만 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만 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8만 원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기준 산정금액 + 2만원	

➤ 지원금 지급

- ▶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 ▶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소급 지원
-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 지급방식 : 계좌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계좌지급 :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최초 지원금 지급 후 지급방식 변경 불가
- 자진신고 사업자(건설업, 별목업)과 공동주택의 경우, 계좌지급 방식만 가능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절차

➤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자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사무대행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무대행기관과 계약체결 후 신청서 등 무료 위탁 가능
- 신청시기 : 연 1회(소급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5명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이름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KT EDI	http://bips.bizmeka.com	(주)케이티	080-318-5306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 일반사업장용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우선, 금년도 어렵고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0.9%가 인상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업(주)는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기를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 후 '19.2.28.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일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준수 여부	예 ☐ 아니요 ☐	

< 유의사항 >

- ①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9.4.1.부터 지원이 보류됩니다.
- 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차년도에 확정된 19년 월보수가 2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 ③ 지원기간 도중 지원대상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단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해 소명할 경우 계속 지원)
- ④ '18년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 퇴사 등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9년에 지급받을 금액에서 상계(충당)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등 서식은 고용 및 산재보험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일자리 관리번호	처리기간	18일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		상시근로자수	
	업종	업태	사업개시일	
공통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계좌	자택 (□□□□□)	휴대전화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원금 결정 통지 방법	고지 [] E-mail [] 우편수령 [] 방법 [] 휴대전화(SMS) 등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지급희망월 (YYYY.MM)	정기지급일 (2회분 이후)

*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최초신청 이후 근로자 재외·변경사항 발생 시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최초신청 이후 매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월 전년도				신청월 해당연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신청 대상근로자(일용근로자 별도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사일 (YYYY.MM.DD)	수급/갑사 단속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원)	정액급여(원)									
			3월12일수급 갑사단속			월급 ☐ 시간급 ☐									
			3월12일수급 갑사단속			월급 ☐ 시간급 ☐									
			3월12일수급 갑사단속			월급 ☐ 시간급 ☐									
			3월12일수급 갑사단속			월급 ☐ 시간급 ☐									
			3월12일수급 갑사단속			월급 ☐ 시간급 ☐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2. 사업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체 확인 가능서류(예: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 1부.
(필수)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예 ☐ 아니요 ☐
(최저임금 준수하는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뒷면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혜택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 신규직원자 1인 기준]

월 평균 보수	월별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금						납부할 금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고용보험 (80%)		국민연금 (80%)		건강보험 (50%)		합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900,000	8,100	5,850	40,500	40,500	31,500	31,500	157,950	6,480	4,680	32,400	32,400	15,750	15,750	107,460	1,620	1,170	8,100	8,100	15,750	15,750	50,490
1,000,000	9,000	6,500	45,000	45,000	35,000	35,000	175,500	7,200	5,200	36,000	36,000	17,500	17,500	119,400	1,800	1,300	9,000	9,000	17,500	17,500	56,100
1,100,000	9,900	7,150	49,500	49,500	38,500	38,500	193,050	7,920	5,720	39,600	39,600	19,250	19,250	131,340	1,980	1,430	9,900	9,900	19,250	19,250	61,710
1,200,000	10,800	7,800	54,000	54,000	42,000	42,000	210,600	8,640	6,240	43,200	43,200	21,000	21,000	143,280	2,160	1,560	10,800	10,800	21,000	21,000	67,320
1,300,000	11,700	8,450	58,500	58,500	45,500	45,500	228,150	9,360	6,760	46,800	46,800	22,750	22,750	155,220	2,340	1,690	11,700	11,700	22,750	22,750	72,930
1,400,000	12,600	9,100	63,000	63,000	49,000	49,000	245,700	10,080	7,280	50,400	50,400	24,500	24,500	167,160	2,520	1,820	12,600	12,600	24,500	24,500	78,540
1,500,000	13,500	9,750	67,500	67,500	52,500	52,500	263,250	10,800	7,800	54,000	54,000	26,250	26,250	179,100	2,700	1,950	13,500	13,500	26,250	26,250	84,150
1,600,000	14,400	10,400	72,000	72,000	56,000	56,000	280,800	11,520	8,320	57,600	57,600	28,000	28,000	191,040	2,880	2,080	14,400	14,400	28,000	28,000	89,760
1,700,000	15,300	11,050	76,500	76,500	59,500	59,500	298,350	12,240	8,840	61,200	61,200	29,750	29,750	202,980	3,060	2,210	15,300	15,300	29,750	29,750	95,370
1,800,000	16,200	11,700	81,000	81,000	63,000	63,000	315,900	12,960	9,360	64,800	64,800	31,500	31,500	214,920	3,240	2,340	16,200	16,200	31,500	31,500	100,980
1,900,000	17,100	12,350	85,500	85,500	66,500	66,500	333,450	13,680	9,880	68,400	68,400	33,250	33,250	226,860	3,420	2,470	17,100	17,100	33,250	33,250	106,590
2,000,000	18,000	13,000	90,000	90,000	70,000	70,000	351,000	14,400	10,400	72,000	72,000	35,000	35,000	238,800	3,600	2,600	18,000	18,000	35,000	35,000	112,200
2,099,000	18,880	13,640	94,450	94,450	73,460	73,460	368,340	15,100	10,910	75,560	75,560	36,730	36,730	250,590	3,780	2,730	18,880	18,880	36,730	36,730	117,75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 13만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2만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9만원 ■ 10시간 미만: 6만원
[일용근로자] ■ 월 22일 이상: 13만원 ■ 19~21일: 12만원 ■ 15~18일: 10만원 ■ 10~14일: 8만원

* 2019년 건강보험료 신규가입자 최대 50% 감면 / 2018년도 가입자는 30% 감면

➤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혜택 [10인 미만 사업, 기직원자 1인 기준]

월 평균 보수	월별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금						납부할 금액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합계	고용보험 (40%)		국민연금 (40%)		건강보험		합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900,000	8,100	5,850	40,500	40,500	31,500	31,500	157,950	3,240	2,340	16,200	16,200	-	-	37,980	4,860	3,510	24,300	24,300	31,500	31,500	119,970
1,000,000	9,000	6,500	45,000	45,000	35,000	35,000	175,500	3,600	2,600	18,000	18,000	-	-	42,200	5,400	3,900	27,000	27,000	35,000	35,000	133,300
1,100,000	9,900	7,150	49,500	49,500	38,500	38,500	193,050	3,960	2,860	19,800	19,800	-	-	46,420	5,940	4,290	29,700	29,700	38,500	38,500	146,630
1,200,000	10,800	7,800	54,000	54,000	42,000	42,000	210,600	4,320	3,120	21,600	21,600	-	-	50,640	6,480	4,680	32,400	32,400	42,000	42,000	159,960
1,300,000	11,700	8,450	58,500	58,500	45,500	45,500	228,150	4,680	3,380	23,400	23,400	-	-	54,860	7,020	5,070	35,100	35,100	45,500	45,500	173,290
1,400,000	12,600	9,100	63,000	63,000	49,000	49,000	245,700	5,040	3,640	25,200	25,200	-	-	59,080	7,560	5,460	37,800	37,800	49,000	49,000	186,620
1,500,000	13,500	9,750	67,500	67,500	52,500	52,500	263,250	5,400	3,900	27,000	27,000	-	-	63,300	8,100	5,850	40,500	40,500	52,500	52,500	199,950
1,600,000	14,400	10,400	72,000	72,000	56,000	56,000	280,800	5,760	4,160	28,800	28,800	-	-	67,520	8,640	6,240	43,200	43,200	56,000	56,000	213,280
1,700,000	15,300	11,050	76,500	76,500	59,500	59,500	298,350	6,120	4,420	30,600	30,600	-	-	71,740	9,180	6,630	45,900	45,900	59,500	59,500	226,610
1,800,000	16,200	11,700	81,000	81,000	63,000	63,000	315,900	6,480	4,680	32,400	32,400	-	-	75,960	9,720	7,020	48,600	48,600	63,000	63,000	239,940
1,900,000	17,100	12,350	85,500	85,500	66,500	66,500	333,450	6,840	4,940	34,200	34,200	-	-	80,180	10,260	7,410	51,300	51,300	66,500	66,500	253,270
2,000,000	18,000	13,000	90,000	90,000	70,000	70,000	351,000	7,200	5,200	36,000	36,000	-	-	84,400	10,800	7,800	54,000	54,000	70,000	70,000	266,600
2,099,000	18,880	13,640	94,450	94,450	73,460	73,460	368,340	7,550	5,450	37,780	37,780	-	-	88,560	11,330	8,190	56,670	56,670	73,460	73,460	279,780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주40시간 이상 근로자] ■ 13만원
[주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2만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9만원 ■ 10시간 미만: 6만원
[일용근로자] ■ 월 22일 이상: 13만원 ■ 19~21일: 12만원 ■ 15~18일: 10만원 ■ 10~14일: 8만원

더 많은 혜택을주는
2019 두루누리 가이드북

사회보험의 혜택은?

1. 고용보험 혜택
2. 산재보험 혜택
3. 국민연금 혜택
4. 건강보험 혜택

Chapter

IV

1. 고용보험 혜택

사업주 혜택

>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고용유지를 한 조치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

> 고용창출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인건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원장 및 조리원 포함)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원장 및 조리원 포함)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0~120만원 차등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운영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운영비 일부를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보육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200~520만원 차등 지원

근로자 혜택

> 재직 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 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 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발생
 -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의 달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둘째아이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원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 64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 해당조건 및 혜택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혜택

▶ 산재보상·재활 서비스 절차

	단 계	보 상	재활(맞춤형통합서비스)
산재 발생	→ 산재신청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치료부터 작업복귀까지 요양·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치 료 중	→ 요양 - 기간연장, 병원변경 - 상병 추가 → 재활서비스 제공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의료재활 지원 - 추가상병·전원·병행치료 - 집중재활치료·재활보조기 지급 → 사회심리재활 지원 - 심리상담서비스 - 희망찾기 및 사회 적응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 취미활동방 → 직장복귀 지원 - 직업능력평가 강화프로그램 (직업복귀소견서 포함) - 원직장복귀 지원 ·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재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재취업상담
치 료 종결	→ 약화시 재요양 신청 → 직업복귀 지원	→ 장애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사회심리재활 지원 - 사회 적응프로그램 - 재활스포츠(수영, 헬스 등) → 합병증등 예방 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 원직장복귀 지원 ·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원 - 원직장복귀 우수 기업 포상 - 재취업지원 · 직업훈련, 취업알선(전문기관 연계)

맞춤형통합서비스는 요양초기 치료부터 직업(사회)복귀까지 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고객님에게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해택·비해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❶ 취업과 관련하여 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❸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는 받는 행위
-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유의사항

-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 · 확인이 쉬워집니다.
-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혜택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작·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연금(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법에 의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연금액 산정방법

연금지급액

기본연금액(×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실제 지급시에는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함

▶ 기본연금액

- 기본연금액은 ①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소득재분배 기능), ②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③가입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20년 가입시 기본연금액 100% 지급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자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19년1월 ~ 2019년12월 적용)

- 배우자 : 연 260,720 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연 173,770원(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연 173,770원(1인당)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0세~65세)이 되신 분에게 평생 동안 지급

조기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평생 동안 지급
※ 청구시기에 따른 감액률로 평생동안 감액하여 지급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

분할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

▶ 노령연금 수급연령

현재 노령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 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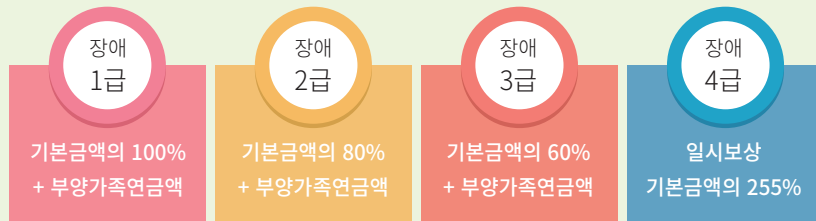
▶ 장애등급 결정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애연금액 및 지급기간

장애 1급~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



▶ 유족연금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아래 해당자가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 체납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부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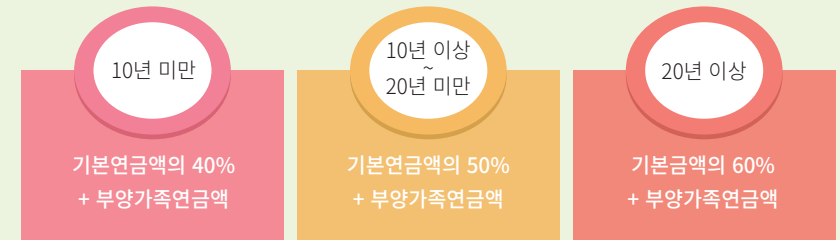
▶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자가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반환일시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0세(~65세)가 된 경우
※ 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분)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건강보험 혜택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 급여의 종류

구분		수급권자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보장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산출산 진료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건강검진

건강검진제도의 개요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진대상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비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	만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만19세 이상~ 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병원에서 확진검사 실시

검진항목

구분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공통항목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별 항목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B형간염	만 40세
	B형간염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2년에 1회)
	우울증	만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66세 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 실시

- (검사항목)

- (성·연령별 검사)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 (공통 검사) 문진 및 진찰(혈압측정 제외), 시력, 청력검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2019 두루누리 가이드북

알면 도움 되는 TIP!

1.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2. 퇴직연금제도

Chapter

V

1.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 혼례비

신청대상

용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19년 :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용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1,250만원 범위 내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자녀학자금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용자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제외)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의료비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용자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용자신청 가능)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임금체불생계비

신청대상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 해당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부부합산)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 5,537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용자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용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용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 부모요양비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응자요건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응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응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장례비

신청대상	혼례비와 동일
응자요건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응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
응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	응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응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응자요건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응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응자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응자조건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소액생계비

신청대상	응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중이고 응자 대상 월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 이하일 것
응자요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 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응자대상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응자한도	200만원 범위 내
응자조건	연 2.5%(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근로자 휴양 콘도 및 공공보육시설 지원

> 근로자 휴양 콘도

사업목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단위 휴가, 휴식 활용기회 제공

사업내용

이용대상

- 평일: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주말·성수기: 월평균소득이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보유콘도

-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 (8개 회사702구좌)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이용요금

- 1박 기준 55,000원~180,000원

이용방법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휴양콘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선정결과 문자 안내 및 이용대상자는 콘도 이용권 이메일 발송
- 콘도이용 후 객실료 현지 지불

>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목적

기혼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지속적 취업활동 보장과 근로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입소대상자

- 근로자 및 일반주민의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입소순위

1 순위	부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순위	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3 순위	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4 순위	조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 동 순위자 중 우선입소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보육사업 안내) 준용

보육시간

구분	평일	토요일	야간연장교육
보육시간	07:30~19:30	07:30~15:30	19:30~22:30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 가능

운영 지역(24개소)

- 수도권(9개소): 모아래(구로), 인천, 남동, 수원, 부천, 군포, 안산, 고양, 동해
- 영남권(7개소): 부산, 창원, 울산, 진해, 대구, 포항, 경주
- 호남권(4개소): 군산, 광양, 정읍, 제주
- 대전권(4개소): 대전, 수안들(청주), 천안, 세종

월보육료

-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목적

여성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지원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 90%로 차등지원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 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3억원	소요비용의 60%
		공동	6억원	소요비용의 80%*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40%)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공동	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공동	20억원	
	대규모 기업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교재교구비 (교제비 3천만원)	5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	교재교구비 (교제비 3천만원)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단독, 공동, 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과 용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 지원 가능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무상지원과 용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원 지원 가능

▶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용자용도	직장어린이집 또는 여성고용친화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 전환비 ※ 여성고용친화시설 : 모유 착유(수유) 시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근로자 전용시설
용자조건	한도 7억원, 이율 연 1~2%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금융기관 대부조건에 따름

🎯 근로자 지원 TIP!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

30명 이하 모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형)과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은?

- 믿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 저렴합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간편합니다 : 복잡한 서식과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습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에서 적립금 자산을 관리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궁금하시면!

- 퇴직연금 가입문의 ☎1661-0075, 온라인 퇴직연금 상담신청(<http://pension.kcomwel.or.kr>)
-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을 검색해보세요!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